

심사관 등급제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 : 특허심사기획과]

제정	2005. 9.22	특허청훈령 제426호
개정	2005.10.12	특허청훈령 제428호
개정	2006. 9.12	특허청훈령 제470호
개정	2007. 4. 6	특허청훈령 제495호
개정	2007.10. 4	특허청훈령 제523호
개정	2008. 4.11	특허청훈령 제545호 (특허청 사무분장규칙)
개정	2008.11.12	특허청훈령 제585호
개정	2009. 5. 1	특허청훈령 제606호
개정	2010. 6.29	특허청훈령 제668호
개정	2011. 6.27	특허청훈령 제694호
개정	2017. 9. 1	특허청훈령 제891호
일부개정	2019.12.27.	특허청훈령 제97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심사하는 심사관을 심사 숙련도에 따라 등급화하고 결재권을 위임함으로써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특허심사기획국,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 특허심판원 및 심사품질담당관실(이하 “심사부서”라 하고, 그 외 부서를 “비심사부서”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심판·소송수행·심사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심사관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개정 2009.5.1., 2017.9.1.,>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심사관등급”이라 함은 수석심사관, 책임심사관, 선임심사관, 심사관의

4등급을 말한다.

2. “심사경력”이라 함은 심사관 발령일(심사국 발령일이 심사관 발령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심사국 발령일)로부터 승급기준일까지의 심사부서 근무기간을 말한다. 다만, 1회에 3개월 이상의 국외 파견 기간 및 1회에 1개월 이상의 휴직·병가 기간은 제외한다.<개정 2017.9.1.>
3. (삭제)
4. (삭제)

제2장 승급기준

제4조(승급의 절차) ① 심사관의 승급은 심사경력 요건 연한을 경과하고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심사관을 대상으로 결정한다.

② 비심사부서 근무, 휴직, 유학, 파견, 병가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심사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심사부서에 복귀한 경우는 인사발령일로부터 3개월간의 심사 적응 기간 경과 후 승급 대상에 포함한다.<개정 2017.9.1.>

③ 심사품질담당관실에서 심사평가 결과 반기마다 선정하는 하위 5% 이내 심사관에 승급일 기준 직전 4회 반기 중 2회 이상 해당하는 책임심사관, 선임심사관, 심사관 또는 소속 심사국에서 승급대상 제외자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승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7.9.1.>

제5조(수석심사관) ① 수석심사관으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0.6.29., 2011.6.27., 2017.9.1.>

1. 심사경력 10년 이상
2.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
3. 책임심사관 심사경력 1년 이상

② 삭제<2011.6.27>

③ (삭제)

제6조(책임심사관) ① 책임심사관으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0.6.29., 2011.6.27., 2017.9.1.>

1. 심사경력 7년 이상
2.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
3. 선임심사관 심사경력 1년 이상

② (삭제)

제7조(선임심사관) 선임심사관으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0.6.29., 2017.9.1.>

1. 심사경력 4년 이상
2.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

제8조(교육과정) ①이 규정에서 등급별로 승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동 교육과정이 폐지·변경되는 경우에는 특허청 승급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다른 교육과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2, 2009.5.1, 2010.6.29., 2011.6.27., 2017.9.1.>

1. 수석심사관 : 심결·판례연구과정, 심판관과정, 심사지도과정 및 기술분야 교육 120시간
2. 책임심사관 : 심사사례연구심화과정, 심판소송제도과정 및 기술분야 교육 110시간
3. 선임심사관 : 심사사례연구기초과정, 선행기술조사과정 및 기술분야 교육 100시간

② 승급시 필요한 교육과정 이외에 상위 등급의 교육과정을 이수(단, 기술분야 교육 제외)한 경우 해당 상위 등급으로 승급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7.9.1.>

③ (삭제)

제3장 승급심사 및 운영

제9조(심사국 승급심사위원회) ① 심사국 승급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심사국 과(팀)장으로 한다.

② 심사국 승급심사위원회는 등급별 승급 후보자를 특허청 승급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

③ 특허심판원은 기획심판장이, 심사품질담당관실은 심사품질담당관이 승급 후보자를 특허청 승급심사위원회에 추천한다.

제10조(특허청 승급심사위원회) ① 특허청 승급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특허심사기획국장, 융복합기술심사국장, 전기통신기술심사국장, 화학생명기술심사국장, 기계금속기술심사국장, 기획심판장으로 한다.<개정 2017.9.1.>

② 특허청 승급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하며 그 결과를 청장에 보고한다.

1. 각 심사국 승급심사위원회 및 기획심판장·심사품질담당관이 추천한 승급후보자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2. 심사관 등급과 관련한 제도 개선에 대한 심의

③ 특허청 승급심사위원회는 반기별 또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제11조(등급재조정) ① 심사품질담당관실에서 심사평가 결과 반기마다 선정하는 하위 5% 이내 심사관에 승급일 기준 직전 4회 반기 중 2회 이상 해당하는 수석심사관, 책임심사관, 선임심사관 또는 소속 심사국에서 등급재조정 대상 심사관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승급심사위원회에서 등급재조정 여부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09.5.1., 2017.9.1.>

② 등급재조정자가 승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신설 2008.11.12>

1. 등급재조정 후 1년 경과

2.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승급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3. (삭제, 2017.9.1.)

③ 등급재조정자는 등급재조정 후 2년 동안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8.11.12>

제12조(보직경로) ① 수석심사관은 심사과(팀)장 및 심사파트장으로 승진 또는 임명시에 우대한다.

② 품질평가관, 소송수행관 업무는 책임심사관 이상이 수행한다. 다만, 심사국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는 선임심사관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차별화) 이 규정에 의한 심사관 등급에 따라 업무를 차별화 하여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① 심사품질담당관실의 심사품질 경연 대회에서 최우수심사관으로 선정된 경우, 각종 심사관련 경진 대회(단, 특허청 주최 또는 특허심사기획국 주최 대회에 한 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경우, 심사명장으로 선정된 경우, 또는 특허청 승급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심사관련 경연 대회에서 수상한 경우에는 당해 등급에서 1회 수상에 한해 상위 등급으로의 승급 기준 중 심사경력 요건 연한을 6개월 차감할 수 있다.

<개정 2011.6.27., 2017.9.1.>

② (삭제, 2017.9.1.)

③ 심사관보는 심사경력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이 규정에서 정하는 승급 기준 중 심사경력 요건 연한을 심사관보로 심사한 기간의 50%를 차감할 수 있다. 다만 차감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한정한다.

④ 시간선택제 심사관의 경우 심사경력 요건 중 심사부서 근무기간 산정에 대해서는 선택 근무 시간의 비율에 따른다.<개정 2017.9.1.>

부칙 <제428호,2005.10.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이 규정 시행 전에 심사관등급을 부여받은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 ② '05년은 승급시에 이수해야 할 교육과정 중, 1개의 교육과정만 이수해도 인정한다.
- ③ '05년은 수석심사관의 심사경력 요건 연한을 7년 6개월 이상으로 하고, 2010년까지 매년 6개월씩 증가한다.
- ④ '05년은 책임심사관의 심사경력 요건 연한을 5년 6개월 이상으로 한다.
- ⑤ 수석심사관의 비율은 '05년 상반기는 12%, 매 반기마다 2%씩 증가하여 '07년부터는 20%를 유지한다.

부칙 <제470호,2006.9.12>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8조, 제10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종전 규정에 의한 승급심사에 적용한다.
- 제2조(경과규정) ① 책임심사관의 심사경력 요건 연한을 '06년에는 6년 이상으로 하고, '08년 하반기까지 매년 6개월씩 증가한다.
- ② 선임심사관의 심사경력 요건 연한을 '06년에는 3년 이상으로 하고, '08년 하반기까지 매년 6개월씩 증가한다.

부칙 <제495호,2007.4.6>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3호,2007.1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특허청 사무분장규칙) <제545호,2008. 4.11>

이 규정은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5호,2008.11.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6호,2009.5.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과정 이수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정 개정 이전에 심결·판례 심화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심결·판례연구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제8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09년에 개최되는 특허청 승급 심사위원회에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승급제외 대상자 및 등급재조정 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특허청 승급심사위원회에서 제4조제3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급제외 대상자 또는 등급재조정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668호,2010.6.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과정 이수에 대한 경과조치) ① '09년 이전에 심판관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심판소송제도과정 및 심판관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09년 이전에 PCT심사기초과정 또는 PCT심사심화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PCT심사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94호,2011.6.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과정 이수에 대한 경과조치) ① '10년 이전에 심사사례연구과정 (I)을 이수한 경우에는 심사사례연구기초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10년 이전에 심사사례연구과정(II)을 이수한 경우에는 심사사례연구 심화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10년 이전에 PCT심사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PCT심사기초과정 및 PCT심사심화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91호,2017.9.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술분야 교육 이수 요건은 '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되, '18년 하반기에는 해당 등급 기준의 30%(이하 소수점 이하 버림), '19년 상반기에는 해당 등급 기준의 45%, '19년 하반기에는 해당 등급 기준의 60%, '20년 상반기에는

해당 등급 기준의 80%, '20년 하반기부터는 해당 등급 기준의 100%를 적용하여 시행한다.

제2조(교육과정 이수에 대한 경과조치) '17년 승급시 이 규정 시행 전 이 전 규정으로 등급별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 이수 요건에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제979호, 2019.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